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부를 행정심판위원회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「행정심판법 시행령」에 상향 입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5. 26. ~ 2026. 6. 5., 입법예고 기간 단축
관련 법제처와 협의 완)

3) 행정규제 : 규제대상 아님

총리령 제 호

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7조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 영</u> <u>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청구인</u> <u>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</u> <u>을 받은 위원회는 「전자정부</u> <u>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</u> <u>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</u> <u>인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</u> <u>· 제2호 · 제4호 및 제6호의 어</u> <u>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</u> <u>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</u> <u>수 있다. 다만, 청구인이 확인에</u> <u>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</u> <u>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